

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개정이유

청주농업고등학교 수영장을 실내수영장으로 전환하여, 관리 운영 주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변경함에 따라, 충청북도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 중 수영장 사용료를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주요내용

충청북도학생회관의 사용료 징수금액 중 수영장 사용료를 신설함
(안 제26조)

개정근거 : 지방자치법 제130조

입법예고결과

- 의견내용 : 수영장 사용료 및 강습료를 청주문화예술체육회관의 수영장 사용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 제출
- 의견 제출기관 : 충북수영연맹
- 반영여부 : 미반영
- 사 유 : 입법예고안의 수영장 사용료는 전국 수영장의 평균 사용료를 감안하였고, 청주문화예술체육회관의 수영장 사용료 인상 시기(2002년도 인상)가 도래하였음을 고려하여 미반영함

조례안 : 붙임

참고사항

-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사용”을 “사용및징수등”으로 한다.

제26조 별표 2의 부속설비 사용료 징수금액란 다음에 수영장 사용료 징수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 용 구 분		징 수 액	비 고	
수영장	일일입장	초등학생이하	1,500원	○ 초등학생이하 : 13세미만 ○ 중·고등학생 : 13세이상 19세미만과 학생증을 소지한 자 ○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○ 강습료는 월 회비에 10,000원을 추가 ○ 단체는 15인 이상 적용 ○ 다이빙장은 외부지도강사 입회시 사용 가능
		중·고등학생	2,000원	
		일반인	3,000원	
	월 회원	초등학생이하	30,000원	
		중·고등학생	35,000원	
		일반인	50,000원	
	단체입장	초등학생이하	1,000원	
		중·고등학생	1,500원	
		일반인	2,500원	
다이빙장	1일당	10,000원		

부 칙

이 조례는 200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발췌서

지방자치법

[일부개정 2004.1.29 법률 제07128호]

130조 (사용료의 징수조례등) ①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②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